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718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대출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3. 12. 1.

다. 회 부 일 : 2023.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현 행	개정안
<신 설>	<u>제5장의11 우주항공복합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u>
<신 설>	☐ <u>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3)</u> ○ 감면대상: <u>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u>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 감면율: <u>사업개시 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u> ○ 감면한도: <u>투자누계액의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u>
<신 설>	☐ <u>제121조의34(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u> ○ <u>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 <u>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u> - <u>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u> ○ 적용기한: 2027. 12. 31.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 적용례: 이 법 시행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박대출의원안 2023. 12. 1. 제출(의안번호 25718)

☐ 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 25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신설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구체적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중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하며,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 및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2024년 설립되는 우주항공청이 입지한 지역으로서 우주항공청의 청사 건설 및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하며, 향후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유치, 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할 계획임.¹⁾

또한, 특별법안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개발계획 등의 수립, 도로, 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²⁾

이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인재 양성을 위해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등 교육기관 지정,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지원, 산학협력력 촉진,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국세,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도 담고 있음.³⁾

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6조

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30조 및 제39조

3)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 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항공우주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성공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주항공청 설립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관련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입주에 대한 지원이 함께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의 전제가 되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신설·규정하는 특별법안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심사 경과에 맞추어 논의될 필요가 있음.⁴⁾

둘째, 지방이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등 지방이전·고용·투자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기업들의 특구입주에 대한 의사결정은 세제지원 외에 입지 및 고용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감면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2023.12.4.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황임.

셋째,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는 기업에게 부여되는 세액 감면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세부담의 형평성·국민개납주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최저한세의 취지에 비추어 최저한세를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⁵⁾

넷째, 개정안 제121조의34에서는 세무서장과 함께 세관장을 감면세액의 추정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관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세관장은 추정권자에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IV. 입법의 재정영향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거법률 및 관련 대통령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대상지역 및 사업범위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세수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⁶⁾

5)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삭제<2019.12.31.>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이하 생략)

6)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고.

문 의 처
02)6788-5157

[참고: 현행 지역특구 감면제도]

구 분		감면요건	감면내용
위기지역 창업기업(§99의9)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 * 해당지역(1개) : 거제	5년 100% 2년 50%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 구역(낙후지역), 여수해양박람회, 새만금(개발 사업자만) (§121의17)	창업 기업	제조업·엔지니어링·전기통신업 등 : 20억원 이상 투자 + 30명 이상 고용 연구개발업 :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물류업 : 10억원 이상 투자 + 20명 이상 고용 * 기업도시(4개) :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지역개발, 지역활성화 : 70개 시군	3년 100% 2년 50%
	개발 사업자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3년 50% 2년 25%
제주투자 진흥지구 (§121의9)	입주 기업	총사업비가 2천만달러 이상의 관광업, 5백만달러 이 상의 문화산업·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청소년수련 시설사업·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교육사업· 의료산업·교육원·연수원·첨단기술활용산업 등	3년 100% 2년 50%
	개발 사업자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3년 50% 2년 2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12의2)		생명공학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3년 100% 2년 5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121의8)		생명공학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121의9)		제조업 : 1천만달러 이상 + 100명 이상 고용 물류업 : 5백만달러 이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121의20)		문화 관련 산업 : 5억원 이상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 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청소년수련시설사업·교 육원운영사업 : 30억원 이상 * 해당지역 : 광주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121의21)		금융 및 보험업 : 20억원 이상 + 10명 이상 고용 * 해당지역 : 부산(문현)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121의22)		보건의료기술산업(해당지역: 충북 오송, 경북 대구) 식품산업(해당지역: 전북 익산)	